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 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목적

2026년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대상지의 작업강도와 난이도에 따른 설계로 사업 성과를 제고 하고자 함.

다. 과업대상

- 위치 : 경북 고령군 개진면 오사리 산32임 외 12필지
- 면적 : **21.45 ha**

라. 과업의 내용

- 기본설계서 및 대상지 조사 검토
- 표준지 조사
- 설계도서, 제시방서 작성,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서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일간**

2. 과업수행 준수사항

가. 본 설계의 용역시행기간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10일간으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아 과업 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과업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지 조서에 따라 철저한 표준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내용, 작업종과 작업량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심사 결정을 받은 후 세부설계 및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바. 본 과업의 사업비 산출을 위한 적용 노임단가 및 작업공정 적용단가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등 산림청 시책에 의거 하며 숲가꾸기사업 부문의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사.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행자가 부담한다.

자.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차. 본 과업 진행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카. 본 과업의 수행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 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타. 발주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파. 설계도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 책임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설계과업지침

가. 일반사항

- 과업 대상자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에 조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시행에 장애요인발생, 사업실행이 부적정할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대상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설계사업비 예산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설계 하여야 하며 설계조사 결과 현지여건,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사업비를 산출한다.

- 사업동의 과정에서 산주가 요구한 사항은 현지여건과 비교하여 수용 가능한 사항은 설계서에 이를 반영하고 수용이 불가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작성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한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사업종은 설계자가 현지 임상에 부합되는 사업종을 선정한다.
-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며 해독이 용이 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전에 발주자 및 관리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후 설계 심사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 및 관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기간에서 제외한다.
- 실시설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시행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작업요령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담당공무원 및 시행자, 관리자의 입회하에 현장안내를 실시 하여야 한다.

나. 표준지 선정 및 조사

- 표준지 조사비율 : 사업대상지 면적의 0.5% 이상
- 표준지 크기 : 개소 당 100㎡(10m×10m직방형 또는 반지름 5.67m 원형 표준지)

－ 표준지 배치

-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상, 중, 하에 고루 배치한다. 단, 2ha 이하로 독립된 대상지는 사업대상지 중앙부에 표준지를 배치한다.

－ 표준지 표시

- 직방형 표준지: 표준지 사각 모서리에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길이 1.0m)로 둘러서 표시
- 원형 표준지: 표준지 중앙부에 임업용 황색 마킹테이프(길이 1.0m) 2겹으로 둘러서 표시

－ 표준지 조사방법

- 표준지 위치 : GPS 좌표를 기록
- 조림목 : 표준지 내에 있는 조림목(유사수종 포함) 본수, 흉고직경, 수고, 가지치기 본수
- 제거대상 : 제거대상목의 종류와 피복도
제거대상 피복도란 조림목 생장을 방해하는 자연발생목 중 조림목과 수관 경쟁을 하는 교목성 수목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비율을 육안으로 측정
- 경사도, 집단화정도 등 할증요소를 조사한다.

다. 설계시 유의사항

- － 산림청 『조림·숲가꾸기이력관리시스템』 입력을 위하여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거 지번별 조서를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 가지치기가 필요한 임지는 가지치기 공정을 넣어 사업비를 산출한다.
- －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 할 경우,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포함 조사한다.
- － 설계시 사업 실행방법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산림의 기능에 부합되게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집단묘지 등 제지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 사업비 산출을 위한 작업단계별 공정은 『숲가꾸기 설계·관리 및 사업 시행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작성

가. 설계서 작성

- 표지, 목차, 실시설계 표준지 배치도(위치도), 작업지시도, 현황사진, 예정공정표, 설계설명서, 소반별 시방서, 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순으로 작성 편철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규격은 A4용지 규격으로 한다.
- 설계서 서식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고 설계서 작성시 문제가 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시방서 작성

- 시방서는 작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설계 도서를 준용한다. 단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본 시방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종별 구분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하여 사업종별 사업 실행방법에 대한 시방서를 작성한다.

다. 설계도면 작성

- 위치도는 축적 1/25,000지형도를 사용한다.
- 설계도는 고령군 지적도(임야도)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면에는 수종별, 작업종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 임소반 명칭은 기 조사·시행된 사업지의 임소반 명칭과 연계하여 연속성을 부여한다.

5. 성과품 납품

- 가. 설계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문서로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실시설계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 나. 설계도서 5부
- 다. 전자기록매체 (CD) 1부
- 라. 조림·숲가꾸기 이력관리시스템 입력에 필요한 자료 등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설계자료. 끝.